

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公印條例(案)

○制定理由

事務管理規定(大統領令 第13390號 '91. 6. 19) 및 同規定施行規則(總理令 第395號 '91. 9. 30)이 制定 公布됨에 따라 現行 “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公印規定”을 廢止하고, “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公印條例”를 制定함으로써 公인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자 관리 方法을 定하려는 것임.

○主要骨子

- 區 分 :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的 印(第2條)
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議長印, 各 常任委員長印 및 事務局長印
- 規 格 :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的 印(3.6cm × 3.6cm)
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議長印(2.4cm × 2.4cm)
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○○○○委員 會委員長印(1.8cm × 1.8cm)
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事務局長印(1.8cm × 1.8cm) (第4條)
- 交付 및 登錄 : 事務局長이 새겨 交付하 고, 公印臺帳에 人영을 登錄(第5條)
- 관리 및 保管 : 公印은 議政係長과 議案 係長이 管理, 保管(제6條)

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公印條例(案)

第1條(目的) 이 條例는 서울特別市麻浦區議 會(이하 “議會”라 한다.)의 名의로 發送· 交付 또는 인증이 필요한 文書에 使用하 는 公印의 規格 및 登錄, 管理등에 關한 事項을 규정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2條(種類) ①公印은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.

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議會議長
2. 各 常任委員會委員長
3. 議會事務局長

③第1項에 명시된 이외의 公印이 필요하 는 때에는 議長의 承認을 얻어 필요하 는 公印

을 따로 備置할 수 있다.

④第2項第2號의 職印은 서울特別市麻浦區議 會內에 發신하 는 公文書에 한하여 使用하 는 事 有하다. 다만,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 항에 대하여는 대외 發신 公문서에 사용 할 수 있다.

第3條(인영의내용) ①청인의 人영은 의회 다음에 “인” 또는 “의인”자를 붙이고 職 印의 人영은 職位의 名稱에 “인” 또는 “의인”자를 붙인다.

②公印의 人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.

第4條(規格) 公印은 정사각형으로 하되, 그 規格은 별표1과 같다.

第5條(交付 및 登錄) 公印은 事務局長이 새겨 交付하 되, 별지 제1호서식의 公印臺 帳에 그 人영을 登錄하여 保存하여야 한 다.

第6條(管理) 청인과 議會議長印 및 事務局 長印은 의정계장이, 各 常任委員會委員長印 은 의안계장이 管理하며, 保管은 항상 견 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.

第7條(捺印의 位置) 公印은 그 機關 또는 職位의 名稱의 끝자가 人영의 가운데 오 도록 捺印한다.

第8條(再交付 및 廢棄) ①公印이 紛失 또 는 消滅되거나 更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事由를 明示하여 事務局長에게 公 印의 再交付를 要請하여야 한다.

②第1項의 경우 또는 기타의 事由로 公 印을 廢棄할 때에는 이를 燒却한 後 事 務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.

第9條(公告) 公印을 交付, 再交付 또는 廢 棄한 때에는 이를 區報 또는 議會公報에 公告하여야 한다.

附 則

①(施行日) 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 한다.

②(經過措置) 이 條例 시행당시 종전의 規 定에 의하여 사용된 公印은 이 條例에 의 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]

공 인 의 규 격

구 분	규 격	비 고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인	3.6cm	목인쇄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장 인	2.4cm	"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○○○○위원회위원장 인	1.8cm	"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장 인	1.8cm	"

[별지 제1호 서식]

공 인 대 장

기 관 명

인 영

등 록	년 월 일	검 인	
새 긴 날	년 월 일		
새 긴 사 램	주소		
	성명		주민등록번호
재 료		인영의 상	
적 요			